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8312
등록일자	2015.4.14.
결재일자	2015.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세무1과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장미경	김회동	신오식	04/15 문경수		
협조자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무행정팀장	김성수 김광수 이규화			



『 **건강한 납세의식 조성을 위한** 』

##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 ■ 추진개요

- 대상자 선정 기준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포함) 3천만원 이상 체납자(총144명)
- 명단공개 기준의 변경사항

구분	2011년~2013년	2014년~
공개대상자 범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체납발생일로부터 <b>1년경과</b>
공개기준 체납액	지방세(가산금 포함) 3천만원 이상	지방세(본세- <b>가산금제외</b> ) 3천만원 이상

- 공개대상 : 70명, 134억원 / 비공개대상 : 74명, 160억원

### ■ 추진일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2015. 4. 23.(목) 16:00 ~ 18:00 제2작은회의실
- 명단공개대상자 사전예고 : 2015. 4. 27.
-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 안내(6개월) : 2015.5.1. ~ 2015.10.31.
- 최종 공개대상자 재심의 : 2015.11월 중
- 명단공개 : 2015. 12. 14.(12월 셋째주 월요일)

2015. 4. 14.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b>관련 규정 및 근거</b>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_고액 상속 체납자의 명단 공개
<b>추진 경위</b>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5년도 과년도 세입목표달성
<b>예산 사항</b>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b>수혜자 및 범위</b>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b>분야별 검토사항</b>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b>타 기관 사례</b>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b>전문가 자문</b>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 and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세금 체납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여 세입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함

## I 근거 및 선정기준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

####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결손포함) 본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

※ 2014년부터 1년경과자로 명단공개 체납기간 단축

#### ○ 신규 공개대상자만 소명절차 진행

《 공개대상 기준의 변경현황 》

구분	2011년~2013년	2014년~
공개대상자 범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공개기준 체납액	지방세(가산금 포함) 3천만원 이상	지방세(본세 - 가산금제외) 3천만원 이상

## II 추진 내용

### 명단공개 방법의 변경

#### ○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

- (기존) 누적 체납자 전체를 공개(기존 공개자 + 신규 발생자)

⇒ 다만, 기존 공개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연도별 공개자료를 업데이트(소명절차는 생략)하여 유지

## □ 최근 3개년도 명단공개 현황<sup>1)</sup>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29	5,405	65	9,008	51	8,848
개 인	5	691	51	7,373	35	7,026
법 인	24	4,714	14	1,635	16	1,822

## □ 추진일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2015.4.23.(목) 16:00 ~ 18:00 제2작은회의실
- 명단공개대상자 사전예고 : 2015. 4. 24.
-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안내(6개월) : 2015.5.1. ~ 2015.10.31.
- 최종 공개대상자 재심의 : 2015.11월 중
- 명단공개 : 2015. 12. 14.(12월 셋째주 월요일)

## □ 공개절차

- ① 심의대상 선정 : 2015.3.1. 체납액 기준 작성
- ② 공개대상 체납자 심의 및 공개 전 사전예고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대상 선정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예고 (기 공개자는 소명절차 생략)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체납액 납부안내 병행)

1) ※ 2006년 최초 공개

※ 공개기준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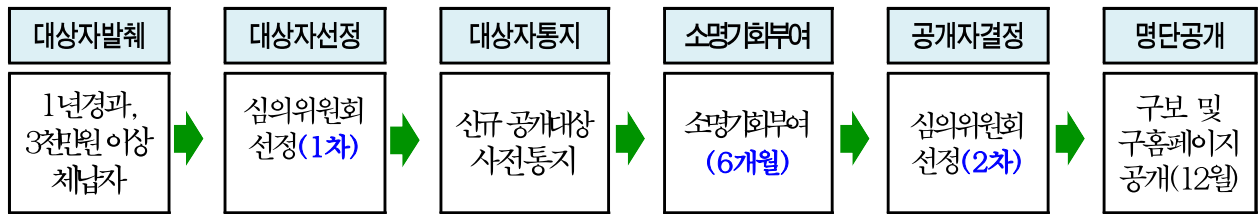
- 2011년도부터 공개대상 범위 확대 : 1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2013년 : 체납액 기준이 본세 ⇒ 가산금 포함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
- 2014년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본세 3천만원이상으로 변경

③ 소명기간(6개월) 경과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 확정

④ 명단공개

- 구보, 구 정보통신망, 게시판 게시
- 공개항목 :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

《공개절차》



### III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1차]

- 일 시 : 2015. 4. 23.(목) 16:00 ~ 18:00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심의안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
-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등 10인 참석
- 심의대상자 : **스톤건설(주) 등 144명, 294억원**

(단위: 명, 억원)

구분	체납자	인원	체납건수	체납액	비고
계		144	9,346	294	
공개대상	정태수 등	70	2,400	134	신규 : 22명 (2,256) 기공개 : 48명 (11,162)
비공개대상	스톤건설 등	74	6,946	160	파산,사망등 : 32건 (7,234) 공개실익 없음 : 42건 (8,802)

※ 비공개대상 중 공개실익 없음 :

- 폐업,해산,무재산 등으로 2014년 명단공개시 제외된 자

**참고** ■ 공개 제외 대상

-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조례 제48조에서 정한 고액·상습체납자 기준금액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에 재산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IV 행정 사항

###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 500,000원(금오십만원)
- 산출내역 : 기본(2시간)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세 세입목표달성,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 일반운영비

- 따로붙임
1. 2015년 제1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 심의(안).
  2. 지방세심의요구서, 심의의결서, 심의록(안).
  3. 관련법규 1부.
  4. 2015년 명단공개 심의대상자 내역 1부. 끝.

# 2015년 제1차 고액채납자 명단공개대상 심의(안)

(2015.3.1.기준, 단위:원)

구분	공개여부	사 유	채납자수	채납액	비고
개인	공개	합 계	49	10,355,711,810	
		채납액 납부익지 부족 / 납부능력 부족	15	1,660,995,860	소명안내
		기공개자	34	8,694,715,950	소명절차 생략
	비공개	합 계	21	4,188,239,060	
		공개실익 없음	13	3,023,727,550	분할납부계획이행중, 공매중
		사망자	8	1,164,511,510	시세기본조례규칙 99조3호
법인	공개	합 계	21	3,064,775,620	
		채납액 납부익지 부족 / 납부능력 부족	7	596,473,230	소명안내
		기공개자	14	2,468,32,390	소명절차 생략
	비공개	합 계	53	11,850,714,120	
		공개실익 없음	29	5,779,768,360	폐업, 해산, 공매중
		파산, 청산 등	24	6,070,945,760	시세기본조례규칙 99조5호

## ※ 명단공개 제외 관련 규정

연번	제 외 대 상	제외근거
1	지방세 불복청구	지방세기본법(제140조 제1항)
2	채납액 30%이상 납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3	회생절차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위임)	
5	채납자 사망 또는 파산선고, 청산종결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99조)
6	경·공매 진행으로 징수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채납액이 1억원 미만자	
7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불복청구	
8	재산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1 ~ 144	심의요구일자	2015.4.23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정태수 등 144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내역 : **29,459,440,610원**)

(단위:원)

세목명	납부기한	계	본세	가산금	결손처분여부
종합토지세 등	1997.10.31. 등 9,346건	29,459,440,610	<b>13,192,316,580</b>	6,464,235,120	9,802,888,910

체납요지	별첨 내역 참조
심의청구이유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지방세법」 제1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15년 4월 23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서 1부.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 1~144)

성명(대표자)	정태수 등 144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내역참조
상호(법인명)		사업등록자번호	
주 소(사업장)			연락처
연 령		직 업(업종)	

### 체 납 현 황

대표세목	납부기한	건수	체납액(원)			체납요지
			본세	가산금	합계	
종합 토지세 등	1997.10. 9,345	9,346	13,192,316,580	6,464,235,120	<b>29,459,440,610</b>	내역 참조

### 심 의 결 과

공개대상	건	공개제외	건
------	---	------	---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서 별첨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1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명		서명	(인)
-----	--	----	-----

## 강남구 기획경제국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록(안)

1. 일 시 : 2015년 4월 23일(목) 16:00 ~ 18:00
2.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3. 참석대상 :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10인
4. 심의안건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대상인 144명 중 기공개자인 48명을 포함하여 70명을 공개예고 대상으로 결정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 사망자, 파산 또는 청산법인 및 폐업, 해산, 무재산, 분할납부계획 이행중으로 실익이 없는 74명에 대한 비공개 여부 등
5. 의결사항

① 심의 대상자 : 정태수 등 144명 (294억원)

(단위: 명,건,억원)

구 분	인 원	체납건수	체납액 (백만원)	비고
<b>계</b>	<b>144</b>	<b>9,346</b>	<b>294</b>	
공개대상	정태수 등 70	2,400	134	신규 : 22명 (2,256) 기공개 : 48명 (11,162)
비공개대상	스튼건설 등 74	6,946	160	파산,사망등 : 32건 (7,234) 공개실익 없음 : 42건 (8,802)

② 심의 결과 : 정태수 등 70명 (134억원) 공개예고 결정

첨 부 : 명단공개 심의내역서 각 1부.

2015. 4. 23.

### 강남구청장 귀하

### 지방세기본법

- 제140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이하 "채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채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채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07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채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채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③ 채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개할 사항은 채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채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채납요지 등으로 하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8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별지 7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2호 서식 및 제73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16]

**제99조(공개제외 대상)** 영 제107조제1항제3호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8.16>

1. 채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채납액이 조례 제48조에서 정한 고액·상습채납자 기준금액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재산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8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시세 채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9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